

NEWSLETTER

August 2020

지식재산권 그룹
Intellectual Property Group

CONTACT



변호사 김은호

T: 02.772.4695
E: unho.kim@leeko.com

변호사 이은우

T: 02.772.4334
E: eunwoo.lee@leeko.com

변호사 광재우

T: 02.772.4985
E: jaewoo.kwak@leeko.com

최근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에 있어서 권리자를 적극 보호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13년부터 개정되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이후, 그 성립요건에 대하여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에 이르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행위(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과정 등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얻어 이를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및 (카)목 위반행위(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 등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여, 그 구체적 성립기준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을 해석하여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일명 'BTS' 사건에서 소속 아티스트의 명성,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을 적용하여 보호하면서 이를 침해하는 유사 화보집 발행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마6525 결정)

대법원은, 2020. 3. 26.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유사 화보집과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쌓아올린 소속 아티스트(BTS)의 명성, 신용 및 고객흡인력 등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성과'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소정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라고 명시적으로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처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각 요건과 관련하여 '성과의 범위 및 판단요소,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의 의미,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적용 시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일명 ‘골프존’ 사건에서 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운영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은,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도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골프장 운영사의 성과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골프코스 자체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골프장 운영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들이 골프장 운영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타인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골프장 운영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적극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3. 일명 ‘에르메스 가방’ 사건에서, 에르메스의 명품 가방에 눈알 모양의 독창적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행 (가)목)을 적용하여, 부정경쟁행위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대법원은, 종래 부정경쟁법지상 타인의 성과물 도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의 핵심이었던 사안으로서, 에르메스의 명품 가방 형태를 차용하되 거기에 눈알 모양의 창작적 도안을 부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가)목)에서 정하는 성과물 도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에르메스 가방 제품	피고들 제품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품표지인 버킨(Birkin)백과 켈리(Kelly)백이 국내에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오므로써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핸드백을 비롯한 패션잡화 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의 상품표지(켈리백과 버킨백)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으로써, 타인의 성과물 모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 피고 제품의 판매에 있어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던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4.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위반(타인의 아이디어 도용행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대법원은, 2020. 7. 23. 피고(치킨배달점 가맹사업 회사)가 원고(광고대행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원고로부터 광고용역 결과물(네이밍, 콘티)을 제공받은 후, 그 결과물 제작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광고대행 회사를 통해 광고용역 결과물인 본건 콘티에 의거하여 광고를 제작하고, 그 네이밍에 따라 만들어진 제품 명칭으로 신제품을 출시·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및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 요건과 관련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노력이 필요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 여부는 ‘거래과정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 정보 제공의 동기와 경위, 정보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여,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어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면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차)목의 시적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하였습니다.

5.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및 (카)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의미, 판단 요소 및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있는바, 향후 이에 관한 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적극 보호하겠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권리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함으로써, 그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의 성공적 수행 및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